

# 인천교통공사 법률고문 선정·위촉 공고

인천교통공사 법률고문 선정·위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인천교통공사 사장

## 1. 위촉분야 및 인원

위촉분야	인원	기간	직무내용
인천교통공사 법률고문	1명	2018. 3. 14 ~ 2020. 3. 13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천교통공사 업무전반에 대한 법률자문</li><li>· 인천교통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법적 분쟁에 관한 사항 위임·대리</li><li>· 그밖에 인천교통공사 사장이 요청하는 법률 서비스 제공</li></ul>

## 2. 신청자격

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공고일(2018. 2. 28) 이전 실제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송수행이 가능한 사람.

나. 결격사유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1) 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징계전력이 있는 자

## 2) 인천교통공사 「인사규정」 제1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인천교통공사 인사규정 제11조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채용비위가 적발되어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
1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선정방법

가. 서류심사 : 제출된 신청서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

나. 심사기준 : 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성, 변호사 경력사항 등

※ 신청자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4. 신청서 접수 및 일정

가. 접수기간 : 2018. 2. 28(수) ~ 2018. 3. 6(화) (09:00~18:00, 공휴일.토.일요일 제외)

나. 접수장소 : 인천교통공사 기획예산팀 (5층) ☎ 032 - 451 - 2044

다. 접수방법 : 첨부된 신청서와 변호사자격증 사본을 본인이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접수(우편 접수의 경우에는 접수마감 당일 도착되는 것에 한해 유효)

라. 결과발표 : 선정자에 한해 개별 통보, 2018. 3. 8(목) 예정

## 5. 그 밖의 사항

### 가. 주요 위촉사항

- 1) 법률고문수당 : 월 200,000원(부가세 제외)의 법률고문수당과 서면에 의한 법률 자문실적 건당 100,000원(부가세 제외)의 자문료 지급
- 2) 소송비용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비용법」을 참조하여 정한 「인천교통공사 법률고문 보수 비용지급 약정서」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지급  
※ 불임의 '소송사건 위임에 따른 보수 및 비용지급기준' 참조
- 3) 제한조건 : 법률고문 위촉기간 내에는 공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의 소송사건 수임, 법률자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에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 자문·고문, 임원 등의 활동을 하거나,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나. 유의사항

-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합니다.
- 2) 제출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의거 폐기합니다.
- 3) 신청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4) 인천교통공사 법률고문으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위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인천교통공사 기획예산팀(☎ 032 - 451 - 20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송사건 위임에 따른 보수 및 비용 지급기준

구분	소가별 지급기준	착수금
신청사건	변론이 없는 경우	200,000원
	변론이 있는 경우	400,000원
본안소송	1,000만원 미만	800,000원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80만원 ~ 150만원
	2,000만원 ~ 3,000만원	150만원 ~ 210만원
	3,000만원 ~ 5,000만원	210만원 ~ 310만원
	5,000만원 ~ 7,000만원	310만원 ~ 390만원
	7,000만원 ~ 1억원	390만원 ~ 480만원
	1억원 ~ 2억원	480만원 ~ 680만원
	2억원 ~ 3억원	680만원 ~ 980만원
	3억원 ~ 4억원	
	4억원 ~ 5억원	
	5억원 이상	
상소심	본안소송 착수금 지급금액	
환송사건	본안소송 착수금의 1/2 이내	
그 밖의 소송비용	1. 인지대 : 실액 2. 송달료 : 실액 3. 검증비 : 실액 4. 감정료 : 실액 5. 그 밖의 비용 : 실액	

1. 위임사건의 소송수행 중 소송물가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증액된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위 지급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은 사건의 중요도와 실거래가격을 참작하여 별도 약정한다.